#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00

발의연월일: 2021. 6. 29.

발 의 자:이주환·김용판·권명호

정찬민 · 김성원 · 이명수

김선교 • 성일종 • 홍문표

정동만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고,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관세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 등 타 분야의 전문직종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.

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 소·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6조의2 및 제2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변리사 또는"을 "변리사·변리사사무소·변리사합동 사무소 또는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사무소 설치) ①・②	제6조의2(사무소 설치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
	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
	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
	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
	치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
	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
	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
	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
제22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 ① 변	제22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 ①
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	<u>변리사 · 변</u>
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	리사사무소・변리사합동사무소
못한다.	<u>또는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